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 지침

제정 2021. 8. 24. 개정 2022. 12. 23. 개정 2023. 9. 26. 개정 2024. 7. 2.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서 전자서명인증 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 준수사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이하 "인정 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청인"이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고자 인정기관에 신청한 자를 말한다.
- 2."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평가결과(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통용평가 결과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8조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3. "인정위원회"란 사업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 원장(이하 "진흥원장"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 4. "인정위원"이란 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위원을 말한다.
- 5. "보궐위원"이란 위원회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위촉하는 인정위원을 말한다.
- 6. "인정사업자"란 법 제8조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인정제도 운영

- 제3조(인정신청) ① 신청인은 진흥원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에 따른 인정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은 진흥원의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정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진흥원은 신청인이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4조(평가기관 선정 지원 등) ① 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이 있을 시 평가기관 선정 지원 및 평가업무 수행 현황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가기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평가기관 전문인력 관리, 인정위원회 운영, 인정업무 수행 등을 위해 평가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사전협의) 평가기관은 사업자로부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기위한 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해당 평가에 적용할 세부 평가기준, 평가 범위, 평가 일정 및 평가 참관에 관한 사항을 진흥원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참관)** 진홍원은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평가기관의 사업자 평가 시 평가 참관을 할수 있다.

제3장 인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 제7조(위원회 역할·구성)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여부
 - 2.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
 - 3. 전자서명 관련 법령의 적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2.>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전자서명인증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10명 내외의 인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진흥원장은 위원 위촉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원 위촉장을 수여한다.
- ④ 위원회는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4. 7. 2.>
- ④ 위원회는 위원과는 별도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진흥원의 인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 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윤리 및 보안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인정 또는 인정 취소 여부를 의결한다.
 - 2. 위원은 성실한 직무수행 및 품위를 유지한다.
 - 3. 위원은 인정 심의와 관련하여 상업적, 재정적 등 기타 모든 압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 4. 위원은 상기 사항 준수에 대해 [별지 제7호] 인정위원 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8호] 인정위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한다.

- 제9조(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 ① 진흥원장은 위원이 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촉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유로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1.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금품수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원이 그 사실이 확인되어 해촉된 경우
- 2.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 제10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개최·운영) ① 진흥원은 인정 또는 인정 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요구 또는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1.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 2. 심의·의결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개정 2024. 7. 2.>
- ③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한다.
- ④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흥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위원회 개최·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개최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다.
 - ② 심의·의결 안건은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제13조(위원회 의결기준) ① 위원회 심의결과는 적합, 부적합, 보류로 결정한다.
- ②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된 평가내용·결과 등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판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평가를 뒷받침할 추가자료가 요구되는 경우에 보류로 판정한다.
- ③ 보류 판정 후 문제된 사항이 보완되거나 추가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평가결과보고서에 거짓으로 보이는 증적이 포함되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판정이 3회 이상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 및 평가기관은 제5조의 인정신청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인정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그 기간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4. 7. 2.>
-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된 사항

- 3. 위원 본인과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장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 제14조(중명서의 발급 등) 진흥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신청인이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별지 제2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증명서 관리 및 재발급) ① 진흥원은 발급된 증명서의 인정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내역을 관리하고 증명서 발급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인정사업자는 증명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정사업자가 업체명, 대표자 등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증명서 변경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사업자 또는 평가기관에게 인정 범위에 한하여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

- 제16조(유효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인정사업자는 제14조에 의한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인정 신청은 제3조의 인정신청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3. 9. 26.>
 -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 이후 인정을 받은 경우 재인정 신청에 대한 증명서 발급일자는 새로운 유효기간 시작일로 기산한다.<신설 2023. 9. 26.>
 - ④ 진흥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인정 신청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사업자는 진흥원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 제17조(인정의 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 2. 폐업 또는 해산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3. 전자서명법 제 17조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 인정사업자에 통지한 후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이의신청) ① 신청인 또는 인정사업자는 인정 취소 등에 관한 심의 결과를 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인은 [별지 제5호] 이의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비밀유지 등) 진흥원, 위원, 평가기관 등 인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21. 8.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26.>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2.>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정보 전자우편(e-mail) 평가구분 []운영기준에 따른 평가 []국제통용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평가기관 구분 인정범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월 년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1.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서류 3.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1부 4.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 1부 또는 국제통용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보고서 1부(평가기관 별도 제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첨부서류 검토 인정위원회 심의 증명서 발급 신청인 인정기관 인정기관 인정기관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증명 | 서 |
|---|---|
| 1. 인정번호 : 2. 업체명 : 3. 대표자 : 4. 인정범위 : 5. 유효기간 : | |
| 위와 같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합니다. 년 월 | 일 |
|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직인 | |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신청인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 | |
| | 전자우편(e-mail) | | | | | |
| 인정 | 인정번호 | | | | | |
| 정보 | 인정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발급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증명서 변경 신청서

|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
| 신청인 | 주소 | | | | |
| | 전자우편(e-mail) | | | | |
| 인정 | 인정번호 | | | | |
| 정보 | 인정범위 | | | | |
| | 변경전 | | | | |
| 변경 | | | | | |
| 내용 | 변경후 | | | | |
| | | | | | |
| 변경 | 경사유 | | | | |
| | <i>-</i> | | | | |
| 위와 같이 전기 | 자서명인증업무 운영 | · 경기준 준수사실 증명서의 변경을 신 | | | |
| | | | 년 | 월 | 일 |
| | | 신청인(대표자) | | (서명 또는 | 인) |
| <u></u> | ·국인터넷진흥위 | 원장 귀하 | | | |
| | | | | | |
| 첨부서류 | 부서류 중명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이의 신청서

| | 업체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Ē | | |
|------------|----------|---------------|---------|----|---------|---|-------|------|
| | 대표자 | | | | 전화번호 | | | |
| 신청인 | 주소 | | | | | | | |
| | 전자우편(e-m | ail) | | | | | | |
| | 통지 받은 날 | 날짜 | | | | | | |
| 통지사항 | 통지된 사형 | 51- 2 | | | | | | |
| 이의신청 대상 | | | | | | | | |
| | | | | | | | | |
| 이의신청 사유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 이의신청합니 | 다. | | | | | | |
| | | | | | | 년 | 월 | 일 |
| | | 신청 | 성인(대표자) | | | | (서명 또 | 는 인) |
| | 한국인터넷 | 넨진흥원 장 | | 귀하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라 이의신청 | 내용을 확인할 수 | 있는 증빙 자 | 료 | | | | |

제 호

인정위원 위촉장

소 속 :

성 명 :

기 간 :

귀하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직인

| 인정우 | 워 | 윤리 | ᄉ | <u> </u> | ᅣ서 |
|-----|---|----|---|----------|----|
| | | | | | |

□ 대상 활동 : TRUST e-Sign 인정위원회 활동

□ 위촉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우리는 TRUST e-Sign 인정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실천하겠습니다.

- 말로 부패방지의 바른 길이라 생각하며, 관계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 하겠습니다.
- 하지 않겠습니다.
- 1. 우리는 혈연·지연·학연 보다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1. 우리는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야 1. 우리는 부정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지겠습니다.
- 1. 우리는 작은 부패에도 관대하지 않을 1. 우리는 업무상 지득한 각종 정보를 것이며,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불법적으로 유출.은폐.왜곡.조작하여 의존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 공공의 피해를 주거나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보부패'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월 일 년

인정위원회 위원장 외 위원 O명 일동

| (인) | (인) |
|---------|---------|
| (인) | (인) |
| (인) | (인) |
| (인) | (인) |
| (인) | (인) |

| 인정위원 보안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위촉 기간 : | 년 달 | 월 일 | - | 년 | 월 | 일 | |
| 본인은 위 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TRUST e-Sign 인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소속 성명 | : | | | | | (서명) |
| ※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등 | | | | | | | |